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

◈ 각종 자재, 상품, 농기계(트랙터, 경운기 등) 등 동산

◈ 농·임·축·어업·염생산업(해당시설 포함) 수입액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 총 수입액의 50% 미만인 자의 농·임·축·어업·염생산업 피해

◈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, 그 밖에 시설물(이하 '건축물등'이라 한다)

◈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

◈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

◈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(단,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)

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기업·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

◈ 법 제36조·제40조·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

◈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

* 단, 대설·지잔·가뭄·서리·강풍·우박·폭염·일조량부족·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지원

◈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(지자체에서 자체지원)